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4.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건강증진과]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건강증진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고,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명시되는 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4조제1항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 안 제 4조제4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 안 제8조제1항은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명시함에 따라 달서구 조례도 5만원으로 조정(변경)하였습니다.

○ 안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은 2024년 7월 11일부터 2024년 8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평가 검토 결과 1건의 개선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후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별지서식 내 성별구분란 표시 제안에 대해 타 항목으로 성별 확인 가능함을 근거로 불수용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의 영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오니,

○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4. 9.
제출자: 달서구청장
(건강증진과장)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과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금연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삭제(현행 안 제4조제1항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절대보호구역 지정내용 삭제
- 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에 대해 명시한 조문 추가(안 제4조제4항 신설)

다.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제1항)

- 과태료 금액 5만원으로 상향

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1)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 2)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 3) 「대구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1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24. 7. 11.~8. 1.) 결과: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 심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1건 접수

○ 의견 접수에 대한 반영 결과

- 조례의 ‘별지서식 제1호, 제2호, 제6호, 제7호에 성별통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별구분란 표시 제안에 대해 타 항목으로 성별 확인 가능함을 근거로 불수용 의견 제출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129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제1항 중 “10만원 이하”를 “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u>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u>」 제8조에 따른 <u>절대보호구역</u></p> <p>3. 4. (생략)</p> <p>②·③ (생략)</p> <p><u><신설></u></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3. 4.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u></p>
<p>제8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u>10만원 이하</u>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p> <p>② (생략)</p>	<p>제8조(과태료) ① ----- ----- ----- ----- <u>5만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p>	<p>제9조(위촉) ① ----- ----- -----</p>

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2. (생략)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
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
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
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
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 ⑤ (생략)

제11조(해촉) 구청장은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
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
성한 단체의 장 (「국민건강증
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
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
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
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
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
하여야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3.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
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 -----

----- 「국민건강증
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
제1호-----

-----.

【관계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 ① 모든 국민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6. 7.>

④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02. 1. 19.>

⑥ 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략)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시행일: 2024. 8. 17.] 제9조

□ 대구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4.12.>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택시 승차대 <개정 2021.4.12.>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0.4.>
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 2023.10.4.>
5. 시민의 통행이 많은 변화한 거리 <개정 2023.10.4.>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신설 2021.4.12.>

7. 삭제 <2024.5.20.>

8.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신설 2021.4.12.>
9. 삭제 <2024.5.20.>
10.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호에서 이동(2021.4.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0.4.>

[전문개정 2020.5.11.], [제3조에서 이동<2020.5.11>]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전문개정 2020.5.11.], [제10조에서 이동(2020.5.11.)]